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대상 확대 〉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50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대상 확대	2
※ 참고자료	6
1. 공원보호협약 추진현황	6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대상 확대

개정안은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활동에 대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u>경관을</u>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 <u>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재 전국에는 8,168km²면적의 81개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그 중 약 77%에 해당하는 6,283km²가 국·공유지이며, 약 23%에 해당하는 1,885km²는 사유지임.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24.7. 기준)

구분	개소수	토지소유자별 면적(km2)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유지	공유지	소계	사찰지	기타
총계	81	8,168 (해상 3,212)	6,283	5,522	761	1,885	432	1,453
국립공원	23	6,888 (해상 2,782)	5,579	5,037	542	1,309	304	1,005
도립공원	30	1,027 (해상 426)	595	434	161	432	97	335
군립공원	28	253 (해상 4)	109	51	58	144	31	113

※ 출처: 환경부

현행법은 공원보호협약을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 및 그 가치 증진을 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는데, 공원보호협약 체결 대상에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지 보호 등 자연생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물 다양성 보전을 저해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보전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원보호협약 체결의 대상을 기존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에서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²⁾’의 보전·

- 1) 「자연공원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현행법은 ‘자연 및 문화경관’을 ‘경관’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 중 ‘자연 및 문화

관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실제로, 국립공원공단³⁾과 토지소유자 등이 야생동물 서식환경 개선, 생태계 오염방지 등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의 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이 법의 목적⁴⁾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법에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연기념물 등의 소유자와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⁵⁾,

경관'을 '경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현행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고 있음.

「자연공원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위임하고, 공단이 제3호의2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려는 대상이 천연기념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541

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등과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자료

1. 공원보호협약 추진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2015	소계	63	141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52 전기일반펜스 11	141
2016	소계	34	124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18 일반펜스 12 경음경광기 4	124
2017	소계	119	198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39 일반펜스 14 경음경광기 66	198
2018	소계	45	247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7 일반펜스 29 와이어펜스 1 경음경광기 8	247
2019	소계	73	284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10 일반펜스 39 와이어펜스 2	245
	생태농업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22	39
2020	소계	44	196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2 일반펜스 15 와이어펜스 8	176
	생태농업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19	20
2021	소계	46	19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전기울타리 3 일반펜스 26	177
	생태농업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17	13
2022	소계	40	165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반펜스 25	160
	생태농업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15	5
2023	소계	19	187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반펜스 19	187
2024 (추진중)	소계	17	300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일반펜스 11	97
	생태농업	친환경비료 및 농자재 지원 2	3
	경관가치 증진 시범사업	훼손지 복원 및 생태가치 증진 4	200
합계		500	2,032

※ 출처: 환경부